

법적 근거

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이하 "ICCPR") 제20조 제2항은 "차별, 적의, 또는 폭력 선동에 해당하는 민족적, 인종적, 또는 종교적 혐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"고 규정하고 있다.

정의

- '혐오'와 '적대'는 대상 집단을 향한 맹비난, 적대감, 증오의 강렬하고 비합리적인 감정을 의미한다.
- '고취'는 대상 집단을 향해 공개적으로 혐오를 부추기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
- '선동'은 국가, 인종 또는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차별, 적대 또는 폭력을 즉각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뜻한다.

기준

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언제나 예외여야 하므로 ICCPR 제20조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. [라바트 행동 계획](#)(A/HRC/22/17/Add.4, 부록)은 어떤 발언이 형법 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려면 다음 6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다.

- (1) **맥락**: 특정 발언이 대상 집단을 향한 차별, 적대 또는 폭력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때 맥락이 매우 중요하며, 맥락이 의도 및/또는 인과관계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수 있다. 발언 행위가 행해지고 발언이 전파된 시점의 지배적인 사회적, 정치적 맥락 하에서 해당 발언을 고려하여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.
- (2) **화자**: 해당 사회 내에서 화자의 입장 또는 지위를 고려해야 하며, 특히 발언의 대상인 청중에게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어떤 지위를 갖는지 고려해야 한다.
- (3) **의도**: ICCPR 제 20조는 의도를 예측한다. 해당 조항은 단순한 자료의 배포나 유통이 아니라 "고취"와 "선동"을 규정하고 있기에, 태만 혹은 무모성만으로는 ICCPR 제 20조에 의거한 위법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. 따라서 청중뿐 아니라 발언의 주제와 대상 간 삼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.
- (4) **내용 및 양식**: 발언 내용은 법정에서 심의해야 할 핵심이며 선동 행위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. 내용을 분석할 때 발언이 얼마나 선동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더불어 발언이 어떤 양식과 형식을 띄며, 발언에서 주장하는 바의 성격이 어떤지, 또는 제기되는 주장 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로 맞춰졌는지를 봐야 한다.
- (5) **발언 행위의 파급 정도**: 발언 행위의 파급 정도라 함은 발언 행위가 닿을 수 있는 범위, 발언의 공공성, 청중의 규모와 수 등을 포함한다. 그 밖에도 발언의 공개 여부, 전단지 등을 통했는지 혹은 주류 언론 또는 인터넷 방송을 통했는지 등의 배포 수단, 소통의 빈도, 분량 및 정도, 청중이 선동되어 행동으로 옮길 수단이 있는지 여부, 발언(또는 작업물)이 제한된 환경에서 유포되었는지 아니면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고려한다.
- (6) **즉각성을 포함한 가능성**: 선동은 정의 상 미완성(기수전) 범죄다. 선동적인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는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범죄에 준할 수 있다. 다만 위해의 위험이 어느 정도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. 즉, 법원은 특정 발언이 대상 집단을 공격하는 실제 행위를 할 합당한 수준의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, 이 때 인과 관계가 어느 정도 직접적이어야 한다.

라바트 행동 계획은 ICCPR 제20조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넘어선 사건이더라도 실제 가해자가 기소 및 처벌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며 지적한다. 반면 모호한 국내 법규정, 법제도 및 정책의 남용으로 소수자는 **사실상 박해**를 받고, 이는 소수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위축 효과를 갖는다. 정치 및 종교 지도자는 혐오 선동 행위를 삼가하고, 혐오 발언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, 혐오 선동에 대한 대응으로 폭력이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. (["인권을 위한 투쟁" 18가지 사명](#) 참조).